

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3. 9.

제 출 자 : 조신행의원 외 5인

1. 제안이유

- 가. 현재 300명으로 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인수를 100명으로 하향 조정하여, 시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고
- 나. 열린 감사를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,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로 변경함 (안 제2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
- 나.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2조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주민 300명 이상”을 “주민 100명 이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지방자치 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 <u>300명</u> 이상으로 한다</p>	<p>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<u>100명</u> —————</p>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

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·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 (전문-“별첨”)

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제2조

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 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한다.<개정 2002. 05. 24 조례 제3109호>